

2013년 우수소방대상물 선정·포상계획

- 안전관리의 실질적 수준향상을 통하여 자율안전 관리를 유도하고, 경영주 등의 관심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.

■ 추진근거

-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2 (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) 및 「동법시행규칙」 제20조의 2
- 「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(고시 제2012-9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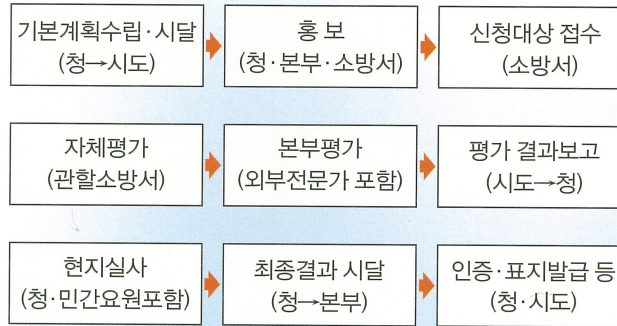
■ 추진배경(목표)

-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 유도
- 관계인(소유자)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소방안전시설의 투자 활성화로 국민생명 보호
⇒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

■ 세부 추진일정

- 추진기간 : '13. 4 ~ 9월 (6개월간)
 - 소방서(접수 및 자체평가단 운영) '13. 4~5월
※접수기간 : '13. 4. 1 ~ 4. 30 (1개월간)
 - 소방본부(시·도)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'13. 6. ~7월
 - 소방방재청(중앙) 현지실사 및 평가 '13. 8~9월

■ 인증·평가관련 업무처리 흐름도



■ 신청대상

-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**특정소방대상물**

■ 접수기간

2013년 4월 1일 ~ 4월 30일 (30일간)

■ 접수처

관할지역 소방관서

■ 인센티브 등 부여

-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부착
-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면제(단계적)

- ① 대통령, 국무총리 표창 : 3년
 - ② 행정안전부장관, 소방방재청장 표창 : 2년
 - ③ 시·도지사 표창 : 1년
- ※ 신청서 뒷면 참조

